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3가합5616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5. 5. 7.

판결 선고2015. 6. 2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610,028원 및 그 중 322,934,302원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4. 7.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10. 8. 접수 제638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41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E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2. 피고 F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는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10. 12. 접수 제32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9.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74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4.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 2012. 10.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7.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0. 3.경부터 공동대표이사로, 2012. 10.경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처남댁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거래

(1) 원고는 2009. 9. 15.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을 3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9. 15.(이후 보증기한이 3회 연장되어 2013. 9. 13.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9. 15.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여신(한도)금액 4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15.(이후 신용보증기한 변경으로 여신기간이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3. 2. 9.경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9. 폐업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13. 4. 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국민은행에 323,684,682원(= 원금 320,000,000원 + 이자 3,684,6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750,380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손해금으로 246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 채권 보전비용으로 5,675,48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의 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는 연 16%이었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은 2012. 10. 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9. 2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2. 10.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3. 6. 24.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C의 재산 내역

(1) 피고 B은 2012. 9.경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을 포함하여 적극재산 2,085,801,780원을,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소극재산 2,409,934,302원을 각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2) 피고 C은 2013. 5.경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5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사 제10호증, 을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610,028원(= 대위변제금 323,684,682원 - 회수금 750,380원 + 확정지연손해금 246원 + 채권회수비용 5,675,480원) 및 그 중

322,934,3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임의조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3) 피고 B과 피고 E, F, D 사이의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9. 11.부터 2012. 9. 13.까지 기간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2009. 9. 15.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다가 2013. 2.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약화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이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책임재산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각 부동산을 며칠 사이에 며느리, 처남댁 등에게 모두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약정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 을사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이 남편인 피고 C의 잦은 외박, 바람기 등에 시달리다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388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5. 29. 당사자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5부동산을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하고, 피고 D이 이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168,000,000원)를 인수하고 피고 C에게 2013.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 D이 2013. 6. 24. 이 사건 5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후 2013. 6. 25.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5부동산은 원래 피고 D, C 부부가 2012. 1. 18.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100,000,000원을 보태어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였던 사실, 2013. 5.말경 이 사건 5부동산의 시가는 약 216,500,000원 정도였고, 이에 대출채무를 공제하면 위 부동산의 가치는 약 80,000,000원가량으로 평가된 사실, 피고 C과 피고

D은 위 부동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등기비용, 대출이자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피고 D이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정산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 D은 이혼한 후 이 사건 5부동산에서 자녀 둘을 양육하며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2013. 7. 2. 위 아파트에서 다른 장소로 전출한 사실, 피고 D은 2000. 10.경 피고 C과 혼인하여 약 12년 이상 부부로 생활하며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혼 및 재산분할의 경위,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정산금의 산정 경위, 혼인 기간, 피고 D의 재산형성기여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

(1) 피고 D(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에 대하여 을사 제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며느리였던 점,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 또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여서 피고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 B이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거래도 매우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D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E에 대하여 을사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E는 피고 B의 처남의 배우자인 점, 피고 E는 주말체험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용도에 적합한 토지인지 의문이고, 실제 위 토지는 농장으로 개발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2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2. 5. 31.(기준일자 2012. 1. 1.) 당시 34,456,500원(= 46,500원 × 741㎡)이나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정해진 점, 피고 E는 2012. 8. 17. 남편

소유의 1톤 트럭을 판매한 대금 19,880,000원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00,000원을 보태어 2012. 9. 11. 계약금 30,000,000원을, 2012. 9. 18. 역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트럭 판매대금이 이 사건 2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의 출처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F에 대하여 을차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가 피고 B와 친척 또는 특정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 B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F는 매도인 측 및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3, 4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에 중개인 G에게 중개수수료로 1,46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 F는 2012. 9. 12. 계약금 30,000,000원, 2012. 9. 25.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0. 12. 잔금지급기일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23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점, 2012. 9. 12. 당시 이 사건 3, 4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보전처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짐작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 E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다은

판사김준혁

별지